

## 개정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745)의 주요특징과 실무적용상 유의점\*

서 정 두\*\*

- 
- I. 서 언
  - II. ISBP 개정배경과 특징
  - III. ISBP 745의 주요내용
  - IV. 결 언 - 적용상 유의점
- 

주제어 : 국제표준은행관습, 은행관습, 신용장통일규칙, 서류심사

### I. 서 언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출입규모가 확대되면서<sup>1)</sup> 대금결제에 관한 클레임도 더욱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FTA 시대에 우리나라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1) GNI 기준 대외의존도는 2011년 113.5%, 2012년 112.8%, 2013년 105.9%이다(BOK 자료).

라는 무역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수출입에 따른 UNPAID 사고를 줄이고 세계 무역관습을 주도하면서 해외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신용장거래의 하자서류로 인한 클레임을 줄이고자 수 년 동안의 연구작업을 거쳐 신용장 통일규칙(UCP)에 추가적으로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제정 및 개정해 왔다.<sup>2)</sup>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상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한 보완서로서, 실무가들에게 성문화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제공하여 하자서류로 인한 클레임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고, 나아가 신용장의 전문가나 연구자,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sup>3)</sup>

본 연구는 개정된 ISBP 745의 주요특징을 정리하는 기초연구로서, ISBP와 UCP의 관계, “국제표준은행관습”의 개념, ISBP의 제·개정된 배경과 특징을 비교 통찰하고, ISBP의 일반원칙과 대상서류인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에 관한 ISBP 745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며, ISBP의 실무적용상 유의점을 적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ISBP의 개정배경과 특징

### 1. ISBP의 의의

#### 1) ISBP와 UCP 600의 관계

---

2)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SBP)*, ICC Pub. Nos. 645, 681 and 745. 혹자는 ISBP를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 번역하기도 하지만, 언어상 “관행”(usage)이란 예전부터 반복되어 행해지는 일의 과정을 말할 뿐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널리 반복되어 사회규범화 된 단계는 “관습”(customs or practice) 등이라 칭하기 때문에 이를 “국제표준은행관습”으로 번역함이 옳을 것이다.

3)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0권, 2003. 8, pp. 317~318. 그 후 선행연구로는 강원진, “200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의 검토”,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8권, 2008. 5 ; 박세운·한기문, “ISBP 주요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12. 12 ;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3호, 2013. 9. 등이 있었으나, ISBP 제정시부터 현행 개정본까지의 발달관습을 통찰한 연구는 없다.

“ISBP”라 함은 UCP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보완서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2002년 10월 UCP 500 하에서 제정되고 2007년과 2013년 각 4월에 개정된 UCP 600 하에서의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말한다.<sup>4)</sup>

ISBP는 UCP 600의 효력범위 내에서 동 UCP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ISBP는 UCP 600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CP 600 제14조 d항<sup>5)</sup> 등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

ISBP는 UCP 600의 규정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나 판정과도 일관성이 있다. 이는 UCP 600에 규정된 일반원칙과 신용장 실무자들의 일상업무 사이에 부족한 공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ISBP와 UCP 600은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별개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다른 관습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ISBP가 해당국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상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여도 UCP 600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업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sup>6)</sup>

ISBP는 정부가 이를 채택하여 적용되는 강행법규도 아니고, 신용장상에 별도의 준거조항을 두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ISBP는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관습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서류심사자들은 각자의 관습을 전세계의 다른 심사자들의 관습에 일치시킬 수 있고, 처음 서류를 제시할 때 부터 하자로 인한 UNPAID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4)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CC Pub. No. 645, 2003, p. 3, No. 681, 2007, p. 3 and No. 745, 2013, p. 9.

5)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UCP 600 Article 14(d)).

6) Donald R. 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 1 ; ISBP 681, Intro.; ISBP 745, Preliminary consideration i.

7) 미주지역의 경우 Kozolchik 교수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IFSA(국제금융서비스협회)에 의하여 “SBPED”(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를 제정함으로써 신용장소송 건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고, 그 후 이는 ICC의 ISBP 제정과 개정작업에도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Donald R. Smith,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p. 3~4 ; Dan Taylor,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Afterword*, ICC Pub. No. 681, 2007. 6, p. 78.

## 2)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발달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에 관련한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이란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금융계에서 정착되어 온 것이다.

① 1920년 뉴욕에서 발간된 “수출용상업신용장규약”(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에서는 서류는 1920년 뉴욕 은행상업신용장회의에서 채택한 “표준관습”에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② UCP 입안자들은 이로부터 73년이 지난 1993년 UCP 500 때부터 그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의 UCP 600 제14조 d항에서는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상호관계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1995년 개정 UCC(미국 통일상법전) 제5편(신용장)은 UCP 용어를 도입하여 개설인은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제5-108조 e항).

④ 1995년 제정된 “유엔 보증신용장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에서는 개설인의 의무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관습표준”(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international practice)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1항).

⑤ 1996년 제정된 미주지역의 SBPED(신용장서류심사 표준은행관습)에서는 이 심사목록의 제목 그대로 1920년의 뉴욕신용장규약을 계수하여 “표준은행관습”(standard banking practic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⑥ 1998년 제정된 ISP98(국제보증규칙)에서도 표준관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류일치성 여부의 결정은 ISP 규칙, 즉 “표준보증관습”(standard standby practice)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01조 b항).

⑦ 2002년 제정된 ISBP는 이들 주요규칙상의 명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목을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ISBP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습”은 UCP의 일반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UCP상에 반영된 은행관습을 지칭한다. 문제는 UCP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은행관습을 배제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UCP 500과

---

8) UCC 제5편에서 “표준관습”이라 함은 UCP에 반영된 국제관습, 금융기관협회가 발행한 기타 관습규칙, 국내 및 지역관습 등을 포함한다(UCC 제5-108조 공식주석 제8호).

SBPED를 주도한 Kozolchyk 교수 등의 다수의견은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sup>9)</sup>

### 3)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위

UCP 600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서류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0)</sup>

① 국제표준은행관습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sup>11)</sup>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준수되어 온 관습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정규적으로 준수되어 오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갖추고 있는 관습이어야 한다.

② UCP에서는 “은행관습”(banking practice)을 그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책임, 거래의 위험 및 신용장의 효용성 등에 대한 배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12)</sup>

③ 국제표준은행관습은 UCP상에 반영된 관습을 말한다. 이는 UCP의 명시 규정만을 지칭한다고 보여지지만, 이에 조문화되지 아니한 수많은 국제은행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너무 엄격히 해석하면 관습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sup>13)</sup> 따라서 이는 UCP의 명시규정뿐만 아니라, 아직 조문화되지 아니한 국제은행관습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조문화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데, 이 역할을 맡아 온 국제기구는 ICC이고 여기로부터 공표된 관련자료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9) Paul Turner,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p. 12~13.

10)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1권, 1998. 2, pp. 347~348.

11) “국제적”(international)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거래할 때를 말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은행지점간의 거래는 국제적인 것이다.

12) Boris Kozolchyk,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p. 32.

13)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p. 62.

요컨대 국제표준은행관습으로 인정되는 자료에는 i) 현행 UCP와 ISBP의 본문, ii) UCP를 해설한 ICC 각종 출판물,<sup>14)</sup> iii)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과 판정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sup>15)</sup> iv) ICC와 제휴한 주요 금융기관의 의견과 판정 및 출판물,<sup>16)</sup> v) ICC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DOCDEX)의 판정과 신용장법에 관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논문 등이 있다. 다만 UCP가 지향하는 국제성의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국내 또는 지역관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sup>17)</sup>

## 2. ISBP의 개정과 구성

### 1) ISBP 645 제정배경(2002)

UCP 500 이후 2000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는 600개 이상의 교육질의가 쇄도하였다.<sup>18)</sup>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적용되는지, 은행이 관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서류가 신용장조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완전한지의 여부도 심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UCP 500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들 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작업부를 설치하였다.<sup>19)</sup>

14)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 No. 680, 2007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ub. No. 434 ; *ibid.* (1987~1988), Pub. No. 469 ; *ibid.* (1989~1991), Pub. No. 494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Pub. No. 459 ; *ibid.* (1991), Pub. No. 489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Pub. No. 535 ;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Pub. No. 632;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Pub. No. 660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 대표적으로 미주의 IFSA가 발행하는 “White Books”가 이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다.

17) ICC,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ICC Pub. No. 665 ; J.E. Byrn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p. 12.

18) Gary Collyer,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Sep. 3, 2003, Session 2. 전체 질의의 58.6%가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등에 집중되었다.

19) ISBP 645 제정작업부는 미국의 Donald R. Smith(시티은행)와 덴마크의 Ole Malmqvist

ICC의 동 작업부는 우선 전세계의 신용장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서류심사목록을 수집하고, 45개국의 ICC 국내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동 작업부는 각 국내위원회의 자료와 함께 ICC의 공식의견(Opinions), 판정(Decisions), 입장서(Position Papers) 등의 연관성을 찾고자 그동안의 ICC 은행위원회 공식 출판물과 DOCDEX 판정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였다.<sup>20)</sup>

결국 ISBP 645는 2000년 5월부터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 의하여 2년 6개월 동안 수차례의 초안작업을 거쳐 2002년 10월 ICC 은행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ICC 출판물 제645호”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sup>21)</sup>

ISBP 645는 총 11장 91절 20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① 예비적 고려 사항, ② 일반원칙, ③ 환어음과 만기일자 계산, ④ 송장, ⑤ 해상/해양선화증권, 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⑦ 복합운송서류, ⑧ 항공운송서류, ⑨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⑩ 보험서류, ⑪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 2) ISBP 681 개선이유(2007)

ISBP는 2002년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도 그 적용에 관한 UCP 500과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10월 ICC 총회에서 UCP 600이 승인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ISBP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2)</sup>

즉, ISBP는 UCP 600과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UCP의 변경조항을 ISBP의 개선본에도 반영하여야 했다. ② UCP 600상에 반영된 ISBP 세부항목은 종전 출판물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③ ISBP상의 사용언어나 형식을 UCP 600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했다.

ICC 은행위원회의 초안그룹은 기존의 ISBP를 재검토하고 19개국에서 도착

---

(단스케은행)를 공동의장으로 한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 양영환·오원석·서정두,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3. 12, p. 7.

21) Donald R. Smith, *op. cit.*, Vol. 8 No. 4, 2002. 10~12, p. 23. 다만 2003년 6월에 ISBP의 일부 조항의 사소한 표현이나 내용이 본 자료에 게재된 대로 수정된 바 있다.

22) Ron Kats,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ICC DCINSIGHT*, Vol. 13, No. 3, 2007. 7~9, p. 2

한 논평을 기초로 185개 조항의 ISBP 681 초안을 마련하였다.<sup>23)</sup> 동 작업부는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된 조건과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서류를 커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UCP 600과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ISBP 681 최종안은 2007년 4월 ICC 은행위원회의 싱가포르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ICC 출판물 제681호”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배포되었다.

### 3) ISBP 745 개정특징(2013)

2007년 UCP 600 이후 국제적으로 신용장 서류심사기준과 관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관습의 변화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 ISBP 개정작업을 승인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초안그룹에 의하여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3월 총 298개 조항의 ISBP 745 최종안이 마련되고<sup>24)</sup> 동년 4월에 “ICC 출판물 제745호”로 발표·시행되었다.

ISBP 745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sup>25)</sup> 즉, ① ISBP 745는 이전과 같이 UCP 600을 분리함이 없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② ISBP 745는 종전보다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실무에서 혼동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③ 구성항목은 크게 예비적 고려사항, 일반원칙,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포장·중량명세서, 수이자증명서 등 기타서류에 관하여도 명확한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④ 내용의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무가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⑤ 분류번호도 전 조항을 단순 나열한 기존 방식과 달리 항목별로 A~Q로 구분하여 각 항목내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ISBP 745의 구성체계는 총 16장 129절 298개 조항, 즉 ① 예비적 고려사항, ② 일반원칙, ③ 환어음과 만기일자 계산, ④ 송장, ⑤ 복합운송서류, ⑥ 선화증권, ⑦ 해상화물운송장, ⑧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⑨ 항공운송서류, ⑩

---

23) ISBP 681 개정작업을 맡은 UCP 600 초안그룹은 영국의 Gary Collyer(ABN 암로은행,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 기술고문)를 의장으로 한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4) ISBP 745 초안그룹은 영국의 Gary Collyer(Collyer 자문회사 이사장)를 의장으로 한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UCP 600*, ICC Pub. No. 745E, 2013. 4, p. 11).

25)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금융연수원,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2013. 7, p. 5.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⑪ 보험서류와 담보범위, ⑫ 원산지증명서, ⑬ 포장명세서, ⑭ 중량명세서, ⑮ 수익자증명서, ⑯ 기타 증명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ISBP 745는 종전의 185개 조항과 비교할 때 각 항목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종전에 없던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수익자증명서, 기타 증명서의 발행인에 대한 설명과 서류의 내용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2-1〉 ISBP 신·구 조항대비표

ISBP 745(16장 129절 298항)	ISBP 681(11장 89절 185항)	ISBP 645(11장 91절 200항)
예비적 고려사항(i-vii)	예비적 고려사항(1-5)	예비적 고려사항(1-5)
일반원칙(A1-41)	일반원칙(6-42)	일반원칙(6-44)
환어음과 만기일자 계산(B1-18)	환어음과 만기일자 계산(43-56)	환어음과 만기일자 계산(45-58)
송장(C1-15)	송장(57-67)	송장(59-72)
복합운송서류(D1-32)	복합운송서류(68-90)	복합운송서류(120-143)
선화증권(E1-28)	선화증권(91-114)	해양/해상선화증권(73-99)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F1-25)	-	-
용선계약부 선화증권(G1-27)	용선계약부 선화증권(115-133)	용선계약부 선화증권(100-119)
항공운송서류(H1-27)	항공운송서류(134-156)	항공운송서류(144-169)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J1-20)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157-169)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170-182)
보험서류와 담보범위(K1-23)	보험서류와 담보범위(170-180)	보험서류(183-195)
원산지증명서(L1-8)	원산지증명서(181-185)	원산지증명서(196-200)
포장명세서(M1-6)	-	-
중량명세서(N1-6)	-	-
수익자증명서(P1-4)	-	-
기타 증명서(Q1-11)	-	-

### Ⅲ. ISBP 745의 주요내용

#### 1. 예비적 고려사항과 일반원칙

ISBP 745의 예비적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과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조항은 UCP 600에 따른 모든 심사서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1) 예비적 고려사항

예비적 고려사항은 크게 ISBP 745의 적용범위와 신용장의 개설이나 변경시 사전에 주의할 점에 관하여 7개 항목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sup>26)</sup>

① ISBP 745의 적용범위는 종전의 서문과 같다. 즉, ISBP 745는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UCP 600과 함께 사용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7)</sup>

② 신용장의 개설이나 조건변경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신용장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그 내용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개설이나 조건변경시 모호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은 UCP 600의 모든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선화증권의 요구시 환적을 금지시키려면 UCP 600 제20조 c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2) 일반원칙 관련규정

ISBP 745 제A1항~제A41항에는 환어음·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원산지 증명서 등 UCP 600의 제18조~제37조에 따른 모든 심사대상서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원칙 관련규정은 약어, 증명서 등, 운송서류의 사본, 서류의 정정,

---

26) 여기서는 ISBP 745의 적용, 신용장의 개설 및 조건변경시 주의를 다한다면 서류심사단계에서 문제가 줄어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김동윤, 전제논문, pp. 182~183).

27) "This publication is to be in conjunction with UCP 600 and not in isolation."(ISBP 745, Preliminary consideration i).

서류송부에 관한 통지서 등, 서류의 일자와 공란 등, UCP 600에 규정되지 않은 운송관련 서류나 표현, 서류의 발행인, 언어, 수리, 오타자, 부속서류, 무서류조건, 원본과 사본, 화인, 서명, 통합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8)</sup>

① 약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단어의 축약, 사선기호와 쉼표의 사용문제이다. 약어의 경우 ISBP 681에서처럼 널리 인정된 것이라면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약어의 누락이나 다른 약어의 사용은 하자가 될 수 있다.<sup>29)</sup>

또 사선기호(/)와 쉼표(.)의 경우 이를 단어의 대체어로 사용하면 각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되었다면 이는 하나 또는 복수의 선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sup>30)</sup>

② 증명서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일자의 표시에 관한 문제이다. 즉, 증명서 등에 일자에 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선령이 25년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상에 선박 건조일자를 기재하거나 선령이 25년 이하라는 증명이 있어야 충족된다는 것이다.<sup>31)</sup>

③ 운송서류 사본, 서류송부에 관한 통지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송서류의 사본이 요구된 경우, 사본에 나타난 정보는 서류 상호간에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만약 UCP 600 서류심사기준에 달리 언급이 없다면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또 ISBP 745에서는 서류송부에 관한 증빙으로서 특사수령증, 우편수령증, 통지서 등이 요구된 경우, 이는 UCP 600 제14조 f항에 따라 심사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다.<sup>32)</sup>

④ 서류의 일자와 UCP 600에 규정되지 않은 운송관련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에 관련하여 환어음의 경우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서류의 경우 발행일이나 담보개시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운송서류의 경우 선적일 또는 발행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 UCP 600에 규

28) ISBP 745, General principle A1~A41.

29)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No. 632, 2002. 6 (이하 “ICC Pub. 632”라 한다), R. 186 and R. 116.

30) 예컨대 “Red/Black/Blue” 또는 “Hamburg, Rotterdam, Antwerp”으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하나 또는 셋 모두 가능한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ISBP 745 A2(a)~(b)).

31) ISBP 745 A4(a)~(b)).

32) ISBP 745 A6~A10 ; UCP 600 Article 14(f).

정되지 않은 인도증서, 화물수령증, 본선수령증 등은 운송서류가 아니지만, 이러한 서류의 심사가 요구된 경우, UCP 600 제14조 f항에 따라 서류 상호간에 모순 없이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한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sup>33)</sup>

⑤ UCP 600에서 정의되지 않은 표현, 언어, 수리, 오탈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UCP 600에서 정의되지 않은 “선적서류”, “기일경과 서류 수리가능”, “제3자서류 수리가능(불능)” 등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특히 ISBP 745에서는 “제3자서류 수리불능”(third party documents not acceptable)이란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어에 관련하여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언어로 작성하되, 언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느 언어로 작성하여도 되고, 서류상에 미리 인쇄된 문구가 있으면 다른 언어라도 무방하며, 서류상의 수리적 계산은 은행의 점검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은 서류상의 총액만 보고 심사하여도 된다.<sup>34)</sup> 오탈자의 경우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용인되지만, 제품번호나 중량 또는 당사자의 성씨 등을 잘못 기재하면 하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sup>35)</sup>

⑥ ISBP 745에서는 무서류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원본과 사본서류에 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추가하였다. 신용장에서 서류의 요구 없이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무서류조건”이라 한다. 예컨대 신용장상에 “packing in wooden cases”라는 조건만 있고 어떠한 서류도 요구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본과 사본서류에 관련하여 ISBP 745에서 추가된 내용은 “서명된 송장의 사진복사본”이 요구된 경우 서명된 원본의 제시도 유효하지만, 신용장에서 원본의 제시를 금지하거나 처분지시가 있는 경우 원본의 제시는 하자가 된다는 것이다.<sup>36)</sup>

---

33) ISBP 745 A11 and A18.

34) ISBP 745 A19, A21 and A22 ; *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2.

35) ISBP 745 A23; ICC Pub. 632, R. 55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489, 1991. 12(이하 “ICC Pub. 489”라 한다), Case No. 202.

36) ISBP 745 A26, A29 and A30.

## 2. 환어음과 만기일자

ISBP 745 제B1항~제B18항에는 환어음 요건, 기한, 만기일자, 은행영업일, 발행, 금액, 배서, 정정, 개설의뢰인앞 환어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환어음의 기한(tenor)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일람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만기일의 확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기일에서의 “from”, “after” 등은 당해 일자를 제외하고, 하나의 B/L에 복수의 선적일자가 있으면 최초의 일자, 복수의 B/L이 제시되면 최후의 B/L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B/L 기준은 기타 운송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sup>37)</sup>

② 만기일자를 실제의 일자로 기재한 경우 신용장조건과 맞게 계산하여 표기하고, 일람후 정기출급의 경우 지급인은행의 수령일자, 하자서류를 승인한 경우 수락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38)</sup>

기타 환어음의 은행영업일, 은혜일, 송금지연, 발행과 서명, 금액, 배서, 정정, 개설의뢰인앞 환어음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ISBP 681에서와 같다.

## 3. 운송서류 관련규정

ISBP 745의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은 UCP 600 운송서류조항의 순서에 따라 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항공운송서류 및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복합운송서류

ISBP 745 제D1항~제D32항에는 복합운송서류(MTD)의 발행, 운송인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지와 목적지, 원본, 수화인과 송화인, 환적과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복합운송서류는 둘 이상의 운송방식을 커버하고 있는 한, 운송방식이나

37) ISBP 745 B2 and B3 ; 서정두,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8. 11, pp. 65~67.

38) ISBP 745 B5 and B6. 예컨대 개설은행이 거절통지한 경우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수락한 다음 날로부터 만기일자가 기산되고, 다른 은행이 거절통지한 경우 개설은행의 서류 수리통지한 다음 날로부터 만기일자가 기산된다(대한상공회의소, 전계서, p. 107).

“복합운송”이란 제목이 없어도 UCP 600 제1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복합운송으로서 “Multimodal”과 “Combined” 용어 모두 인정된다.<sup>39)</sup>

② 복합운송서류는 UCP 600 제19조에 규정된 바의 서명과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이를 발행할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대리하는 본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며, 또 운송주선인 복합운송서류가 허용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여도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sup>40)</sup>

③ 환적금지인 경우도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되었다는 복합운송서류는 수리되며, 또 동일한 수송수단·운항일정·목적지와 여러 원산지점으로 된 복합운송서류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때 최종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④ 복합운송서류는 “무고장”이란 단어가 없거나 삭제되었더라도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에 관한 특기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 물품명세에 관하여도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sup>41)</sup>

⑤ 복합운송서류상의 운임과 추가비용의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타 복합운송서류상의 본선적재 표기, 적재지와 목적지, 원본, 수화인과 송화인, 서류의 정정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ISBP 681에서와 같다.

## 2)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ISBP 745 해상운송조항은 제E1항~제E28항(선화증권), 제F1항~제E25항(해상화물운송장), 제G1항~제G27항(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등에 있다.

① 선화증권 관련 ISBP 745는 종전과 같이 UCP 600 제20조의 적용, 발행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환적과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복수의 서류에 커버된 물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대항선적을 커버하는 운송서류 또는 해상선적만을 커버하는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UCP 600 제2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하고

---

39) ISBP 745 D1 and D2.

40) ISBP 745 D3 to D5. 복합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인의 요건과 서명자의 요건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UCP 600 제19조에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인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서명자 및 운송인의 상호표시에 대한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1) ISBP 745 D24 to D26. 이러한 취지는 선화증권, 항공운송서류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에 따르기 위해 선화증권은 항대항선적을 커버하고 있어야 하지만 “해상, 해양 또는 항대항 선화증권” 등의 제목을 필수로 하지 아니한다.<sup>42)</sup>

기타 선화증권의 발행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항구, 원본, 수화인과 송화인, 환적,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ISBP 681에서와 같다.

②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관련하여 종전의 ISBP 681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ISBP 745에서 새로운 서류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실무적으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빈번한 사용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UCP 600 제21조의 적용, 발행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환적과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복수의 서류에 커버된 물품 등 선화증권에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43)</sup> 왜냐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일부의 특성을 제외하고 선화증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③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관련 ISBP 745는 UCP 600 제22조의 적용,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원본, 수화인과 송화인,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련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sup>44)</sup>

특히 ISBP 745에서는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 UCP 600 제2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제20조가 적용될 선화증권과 중복되는 혼란을 막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적재항과 양륙항이 지리적 구역으로 요구된 경우, 적재항은 실제의 항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양륙항은 같은 지리적 구역으로 기재할 수 있다.<sup>45)</sup>

기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은 조항의 형태가 다소 변경되었을 뿐 내용상의 큰 변화 없이 종전의 ISBP 681에서와 같다.

### 3) 항공운송서류

ISBP 745 제H1항~제H27항에는 UCP 600 제23조의 적용, 발행과 서명, 인

42) ISBP 745 E1~E2 ;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p. 199~201.

43) ISBP 745 F1~F25.

44) ISBP 745 G1~G27 ; 김동윤, 전게논문, pp. 188~189.

45) ISBP 745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양륙항을 지리적 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용선운송계약이 정기선 해상운송계약과는 달리 주로 도착지역이 같은 방향의 화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ICC Pub. 632, R. 168).

수사실 표기, 출발공항과 목적공항, 원본, 수화인과 착화통지처, 환적과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항공운송서류는 종전과 같이 공대공선적의 증명이 있는 한, “송화인용 송장” 등의 표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서명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한다.<sup>46)</sup>

② 항공운송서류는 물품의 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실제의 발송일자가 요구된 경우 그 발송일자를, 발송일자가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발행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보며, 기타 항공기의 취항일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sup>47)</sup>

③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은 IATA 약식코드로도 가능하나, 지리적 구역이 아닌 실제의 공항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의 특성상 기명식이고 “송화인용 원본”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착화통지처는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sup>48)</sup>

④ 운임지급 여부와 추가비용 표시는 종전과 같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되,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선지급”과 “착불” 조항이 인쇄된 경우 해당 공란에 금액만 기재하여도 충족된다.<sup>49)</sup>

기타 항공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은 종전의 ISBP 681에서 큰 변화가 없다.

#### 4)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ISBP 745 제J1항~제J20항에는 종전과 같이 UCP 600 제24조의 적용, 운송인과 서명, 선적지와 목적지, 원본, 수화인과 착화통지처, 환적과 분할선적, 무고장서류,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원본은 “원본”이란 표식이 없어도 되지만, 도로서류는 “송화인용” 사본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철도서류는 인증된 부분만으로도 수리된다.<sup>50)</sup>

---

46) ISBP 745 H2~H6 ; 서정두, 전제서, pp. 144~147.

47) 항공운송서류상에 표시되는 항공기의 취항일자(flight date)나 취항번호(flight number)는 발송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타 취항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에서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48) ISBP 745 H9~H16.

49) 이는 항공운송서류가 다른 방식의 운송서류와는 달리 서류상에 운임부담금 “선지급”(prepaid)과 “착불”(collect)의 공란을 미리 인쇄하여 두는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50) 이는 도로운송서류의 경우 송화인용 사본(copy for shipper)이란 표시가 있거나, 또는 서류를 전달하는 상대방의 어떠한 표식도 없어야 하며, 또 철도운송서류의 경우 철도회사의

② 운송서류의 발행시 철도서류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명의 없이 출발역에서 수령일자만 타인되어 있어도 수리되나, 도로/철도/내수로운송 모두 고유의 특성상 기명식이어야 하고 착화통지처는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기타 육상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은 종전의 ISBP 681에서 큰 변화가 없다.

#### 4. 보험서류 관련규정

ISBP 745 제K1항~제K23항에는 UCP 600 제28조의 적용, 발행인과 서명, 원본, 일자, 부보금액, 담보위험, 피보험자와 배서, 약관, 보험료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조항제목도 UCP 600 제28조와 일치하게 사용하고 있다.

① 보험서류의 종류는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또는 포괄예정보험 확정통지서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발행인의 범위도 보험회사나 보험업자 또는 이들 대리인이나 대행인(proxy)까지 포함하여 UCP 600과 일치시켰다.

특히 ICC 은행위원회에서 보험업자 등의 대행인이 서명한 보험서류도 수리된다는 의견에 따라 ISBP 681 때부터 확대된 서명범위를 반영하고 있다.<sup>51)</sup>

② 보험서류는 분할담보의 명시가 없는 한, 동일한 피보험위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단일의 서류이어야 하며, 분할담보서류의 경우 각 보험자의 공동책임 또는 주된 보험자의 전액담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수리될 수 있다.<sup>52)</sup>

기타 ISBP 745의 보험서류와 담보범위에 관련된 규정은 종전의 ISBP 681의 취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기타서류 관련규정

ISBP 745는 기타서류로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수익자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종전의 ISBP 681에서

인증이 있는 부분(탄소복사지 등)만으로도 원본으로서 수리된다는 의미이다.

51) ISBP 745 K2~K4 ; UCP 600 Art. 28(a) ; Gary Collyer & Ron Katz,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 No. 660, 2005, R. 580.

52) 분할담보(partial cover)의 경우 공동책임조항이나 전액담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ICC 의견서 등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인위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큰 변화가 없으나, 이외의 서류는 이번 개정본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sup>53)</sup>

① ISBP 745 제L1항~제L8항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본요건, 발행인, 내용 등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과 발행인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것이어야 하고, 발행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GSP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수익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 경우 상공회의소나 협회 등에서 수익자를 표시한 서류로도 충족된다.<sup>54)</sup>

기타 원산지증명서상의 탁송인(consignor)이나 수출상은 신용장 수익자나 운송서류의 송화인과 서로 다른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sup>55)</sup> 이외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내용은 종전의 ISBP 681과 같다.

② ISBP 745 제M1항~제M6항에는 포장명세서, 제N1항~제N6항에는 중량명세서의 각 기본요건, 발행인, 내용 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포장명세서나 중량명세서를 심사할 경우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면 총액만을 심사할 뿐 수량, 중량, 용적 등의 내용은 심사하지 아니한다.<sup>56)</sup>

③ ISBP 745 제P1항~제P4항에는 수익자증명서, 제Q1항~제Q11항에는 기타 증명서(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수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등)의 각 기본요건, 서명, 발행인,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익자증명서의 경우 내용은 상호 모순이 없으면 충분하나, 반드시 수익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기타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수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등의 경우 각 서류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 모순이 없다면, 발행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sup>57)</sup>

---

53) ISBP 745 L1~L8 Certificate of origin, M1~M6 Packing list, N1~N6 Weight list, P1~P4 Beneficiary's certificate, Q1~Q11 Certificate.

54)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나 제3국 통과시의 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발행인은 각국의 실정법에 따라 허용된 당사자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55) 예컨대 신용장 수익자가 이미 제조업자를 탁송인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경우, 선화증권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송화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56) ISBP 745 M4 and M6, N4 and N6.

57) ISBP 745 P2 to P3, Q1 and Q4 ; 대한상공회의소, 전게서, pp. 471~473.

## IV. 결론 - 적용상 유의점

### 1. ISBP의 효과와 문제점

UCP 600은 신용장 UNPAID 사고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소한 하자나 UCP 조항 등에 관한 분쟁건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sup>58)</sup>

① ISBP 745는 신용장서류의 준비와 심사에 관련된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신용장업무의 모든 당사자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다. 즉, 신용장서류의 준비단계나 서류요건을 입증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분쟁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무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sup>59)</sup> 나아가 ISBP는 신용장관련 전문가, 연구가 또는 법조인들에게도 중요한 인용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범세계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0)</sup>

② ISBP 745는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과 ICC 각 국내위원회의 의견 및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정 및 개정된 것이지만 완벽한 규칙은 아니다. 즉, ISBP는 방대한 조항의 수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점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SBP는 현행의 표준(standard)을 반영할 뿐이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UCP 600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과제도 많다. 예컨대 송장상에 서명과 일자가 필수적인지의 여부에 관한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UCP 600 제17조에 규정된 원본서류의 인정범위 등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sup>61)</sup>

③ ISBP 745의 성공 여부는 ISBP 프로젝트의 참여은행이나 국가와 범세계적으로 UCP 600의 본문 39개 조항만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광범하게 하자사유의 판단근거를 찾도록 홍보·설득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58)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 No. 681, 2007. 6, p. 12.

59) Martin Shaw,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Jan-March 2003, p. 13.

60) Guy Sebba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 681, 2007. 6, p. 3.

61) Reinhard Längerich,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op. cit.*, Jan-March 2003, pp. 15~16.

우리의 입장에서도 국내은행들의 ISBP 접근정도를 점검·홍보하고, 국제표준관습과 국내관습(local practices)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정책적인 대응방안(유의점)을 제시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④ 나아가 서류의 항목별로 ISBP 745, UCP 600, ICC Opinions, Decisions, Position Papers, DOCDEX 판정, 기타 국제규범 등에 의거한 소위 “e-Nego” 콘텐츠를 탑재한 무역서류심사용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개발하여 검색어나 항목별 클릭만으로 서류심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UNPAID 사고를 줄이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2. ISBP의 활용상 유의점

ISBP 745는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필요한 지침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류의 1차 제시에서 하자의 거절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① 실무자들은 UCP 600에 따른 신용장상에 서류를 지정하고 심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ISBP 규정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sup>62)</sup>

단일의 출판물로는 신용장이나 UCP 600과 이에 반영된 국제표준관습하에서 신용장의 해석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서류를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ISBP는 일상업무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된 조건과 화환신용장하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서류들을 커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출판물과 UCP 600을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개선해 왔다.

② 신용장상에 UCP 600의 효력을 수정하거나 배제하는 조건은 역시 ISBP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ISBP상에 기술된 관습들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반드시 UCP 600상에 내포된 규칙을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배제하는 신용장조건이 있는가를 주시하여야 한다. 또 본문에 사례가 제시된 경우는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③ ISBP 745는 신용장 당사자들을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반영할 뿐이므로, 기타 개설의뢰인의 의무와 권리 및 구제방법은 개설은행과의 개별약정, 기초거래의 이행여부,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관습하에서의 모든 반대규정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즉, 개설의뢰인은 대금보상 의무를 면하고자

---

62) Guy Sebban, *op. cit.*, ICC Pub. 681, 2007. 6, p. 3.

할 때에도 ISBP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ISBP 745는 신용장상에 UCP 600에 추가하여 별도의 준거규칙으로서 삽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UCP 600이 ISBP상에 기술된 관습들을 포함한 국제표준은행관습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ISBP는 UCP 600과 함께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별개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sup>63)</sup>

---

63)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op. cit.*, p. 12.

## 참 고 문 헌

- 대한상공회의소·한국금융연수원,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2013. 7.
- 서정두,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8. 11.
-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5권 3호, 2013. 9.
- 박세운·한기문, “ISBP 주요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12. 12.
-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0권, 2003. 8.
- Collyer, Gary & Katz, Ron,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ICC Pub. No. 660, 2005.
- Collyer, Gary,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Sep. 3, 2003.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 ICC,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ICC Pub. No. 665.
-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 No. 680, 2007.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No. 632, 2002. 6.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UCP 600*, ICC Pub. No. 745E, 2013. 4.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489, 1991. 12.
- Kats, Ron,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ICC DCINSIGHT*, Vol. 13, No. 3, 2007. 7~9.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 Längerich, R.,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ICC DCINSIGHT*, Vol. 9, No. 1, Jan-March 2003.

- Shaw, Martin,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Jan–March 2003.
- Smith, Donald 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 Taylor, Da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Afterword*, ICC Pub. No. 681, 2007. 6.
- Turner, Pau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 ABSTRACT

### The Key-points of the Revised ISBP 745 and Some Considerations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Seo, Jung Doo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UCP 600 (ISBP 745) is the product by the Drafting Group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during a number of years.

ISBP 745 is 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600, ICC's universally u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ISBP 745 does not amend UCP 600. Two rules should be read in their entirety and not in isolation.

ISBP 745 explains, in explicit detail, how the UCP 600 rules are to b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It fills a needed ga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announced in UCP 600 and the daily work of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It has developed into an invaluable aid to banks, corporates, logistics and insurance companies alike, on a global basis.

By using ISBP 745, document checkers can bring their practices in line with those followed by their colleagues worldwide. The result should b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shipping documents refused for discrepancies on first presentation.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reasons for revision of the ISBP rules and the key-points of ISBP 745, and to provide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with some considerations under its practical application.

Key Words : 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UCP